

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94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·
융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·주거 등 사회문제를
해결하고자 2013년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조성·운영하고 있음
- 나. 사회투자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육성하는 임팩트
투자조합을 결성·운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,
2020년 사회투자기금 출자 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근거

-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
-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
-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나. 추진 방향

- 정부 모태펀드, 사회투자 전문기관과 투자조합 조성 및 사회투자
기금 출자
- 서울시 관내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투자·보육
연계 지원으로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(투자→성장→자금회수→재투자)

다. 조성형태 :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

조성형태	근거법령	투자대상	설립주체
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	중소기업창업지원법	비상장창업자, 벤처기업 등	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
신기술사업 투자조합	여신전문금융업법	신기술사업자	신기술사업금융업자
한국벤처 투자조합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	중소기업, 벤처기업 등	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

라. 조합 조성 · 운영절차

- 조합 존속기간 : 8년 이상
- 투자조건 : 투자대상에 서울시 출자금의 150% 이상 투자
- 투자대상 :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

구 분	대 상	비 고
지 역	서울 소재	본사, 공장 또는 사업소가 서울에 소재
정 의	사회적경제 기업 등	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
형 태	창업기업 등	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등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벤처기업, 기술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신기술사업자 등

- 운용사 공모방법 : 제한경쟁입찰
 - 신청자격 :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10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

마. 출자 필요성

- 사회적금융은 재무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자금을 투융자 하는 금융으로, 국내 사회적금융 시장규모 미미

-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적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임팩트금융 생태계를 조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및 서로 돌봄·사회주택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필요

바. 소요예산 : 10억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(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)

⑤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·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
2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3.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
4.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

-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- 지방자치법 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(중소기업자의 범위)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"중소기업 시책"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
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
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○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에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정책팀 옥창석(☎2133-5479)